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 10 조례 제18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훈·상·제 관련 의례 사업
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